

## 원어민 채용 계약서

수지 올리성동원(이하“갑”이라 한다.)과 ESL AGENT(이하 “을”이라 한다.)는 원어민강사 고용알선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업무관계를 체결하고, 외국인/내국인 의 고용업무에 있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제 1 조 (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영어 강사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업무에 있어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 제 2 조 (서비스 내용)

- 2.1) 상기의 강사 고용알선 서비스에는 “갑”이 제시한 세부 요청에 따른 후보자 추천, 후보자 압축 선택 및 최종 단계인 채용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며, “을”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 성사된 채용에 대하여 “갑”이 약정된 요금을 지불한다.
- 2-2) 항공권 예매 및 발급과 공항 픽업관련
  - (1) “갑”의 요청시 “을”은 항공권 예매를 대행한다 (항공권 비용은 “갑”이 즉시 지불한다.)
  - (2) “갑”이 공항 픽업 수수료(W100,000)를 지불할 경우에 한하여, “갑의 피 고용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공항 픽업 및 “갑”으로 인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 3 조 (서비스 절차)

- 3-1) “을”은 “갑”의 구인의뢰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 “갑”에게 후보자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 3-2) “을”은 “갑”에게 후보자에 관한 신상자료 및 이력서를 제출 후 “갑”은 제반 정보의 검토 후 최종 선발의 의사여부를 “을”에 통지하여야 한다.
- 3-3) “을”은 “갑”에게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며, “갑”의 요구 시 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 면접환경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4) “을”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 “갑”이 최종 선택하여 후보자와 고용계약 체결 후, 후보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관련 업무를 도와준다.

### 제 4 조 (서비스 조건)

- 4-1) “갑”은 “을”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0 업무 관련 요청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 4-2) 상기 서류에는 “갑”의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와 후보자가 일하게 될 고용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4-3) “을”은 “갑”에게 각 후보자의 세부 경력 사항을 면접에 앞서 제출한다.

4-4) “을”은 후보자 면접을 주선한다. (전화 인터뷰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5 조 (기밀유지)

5-1) “갑”과 “을”은 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출할 수 없다.

5-2) 만일 “을”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를 “갑”이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채용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직접 “갑”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은 1년 동안 유효하다.

### 제 6 조 (서비스 보증)

6-1) 만일 “을”을 통하여 채용된 강사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1) 강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2) 강사의 도주 등으로 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1) “갑”의 추가 고용알선 수수료의 지급 없이 후보자를 동일한 절차로 유치하여 빠른 시일에 “갑”이 채용토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체 강사에 대한 항공권, 비자 수수료 등은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을”이 2개월 이내에 대체 강사를 구해주지 못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지불 받은 고용알선 수수료 중 아래 규정에 의한 부분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체결된 강사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100%
- 체결된 강사가 1개월-2개월 사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80%
- 체결된 강사가 2개월-3개월 사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고용알선 수수료의 60%

6-2) 단, “갑”이 채용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채용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또는 “갑”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는 상기 제 6 조 6-1 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3) “갑”의 필요에 의해 강사가 E-2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6-4) 강사 계약체결 후(“갑”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팩스나 e-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 “갑”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갑”은 약정된 서비스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배상하며, “갑”이 E2 비자서류 수령 후에 계약 파기 시에는 “갑”은 서비스 비용의 30%의 위약금을 “을”에게 배상한다.

### 제 7 조 (서비스비용 지불방식 및 금액)

7-1) 지불시기

- (1) 피고용인이 E2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고용계약 체결시(“갑”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써 팩스나 e-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 : 서비스 비용의 10% 지불
- 피고용인의 E2 비자서류를 모두 수령한 때 : 서비스 비용의 40%
- 피고용인이 입국한 후 3일 이내 : 서비스 비용의 50%
- (2) 피고용인이 E2 비자를 받지 않는 경우(예: F2 비자 또는 교포강사)
  - 고용계약 체결시(“갑”과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써 팩스나 e-mail에 의한 계약 체결 시에도 적법한 계약체결로 본다) : 서비스 비용의 10% 지불
  - 피고용인이 입국한 후 3일 이내 : 서비스 비용의 90%

단, 피고용인이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작일을 입국일로 본다.

7-2) 고용알선 수수료는 채용인력 1인에 대해

**금 일백만원 (₩1,000,000)으로 한다.**

(공항픽업 관련 서비스는 “갑”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항픽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원어민 직업소개소 정식 허가업체로서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며, 100% 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대금지불 후 사업자등록 사본을 팩스송부 바람)

7-3) “을”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 급 방 법 : 은행계좌이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결제

은 행 명 : 우리은행

계 좌 번 호 : 1005-701-376769

수 취 인 : (주)이에스엘에듀케이션

## 제 8 조 (계약의 효력)

8-1) 본 계약은 양 사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 보관한다.

2014 년 7 월 21 일

갑 :

주소 :

연락처:

담당자 :

(인)

을 : (주)이에스엘에듀케이션

대표이사 : 유 선 (인)

전화번호 02-2675-0582 팩스번호 02-337-4670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 가 121-59 당산빌딩 301 호

